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변경〉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67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1.
3. 회부연월일 : 2025. 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군의 전력 발전과 무기체계 다변화로 해군이 해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의 해저 수중 전력 또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작전범위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Ⅲ. 검토의견

- ☐ 개정안은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海上)작전에서 해양(海洋)작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생략)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 -----해양작전-----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해군의 주임무는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海上)작전임.

1963년 법률 제1343호에서 해군의 주임무가 해상(海上)작전으로 규정¹⁾된 이후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 해상(海上)작전은 순수히 어휘적으로만 보면 바다 표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전을 의미함.

1) 「국군조직법」(법률 제1343호, 1963.5.20. 전부개정)
第3條 (各軍의 任務等) ②海軍은 海上作戰을 主任務로 하고 이를 위하여 編成·裝備되며 필요한 教育·訓練을 한다.

하지만, 해군은 수중(水中)에서의 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잠수함 전력, 수중폭파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특수전전단(UDT), 해양 재난·사고에 대응하여 인양 및 구조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난 구조전대(SSU)를 운용하고 있어 현행법은 해군의 실제 작전 범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해상(海上)뿐만 아니라 수중(水中)에서도 활발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의 작전범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해군의 작전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 해군본부 해상작전과, 해상정보과 등 관련 부서의 명칭 변경 검토와 같은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²⁾에 따르면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잠수함사령부 등 수중작전 부대를 고려할 때 현행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칙의 타법개정을 통해 해당 용어를 ‘해양작전’으로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

나.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

수정하는 것이 법률 간 정합성과 해군 임무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보임.

개정안 부칙	수정의견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해상작전”을 “해양작전”으로 한다.

- ☐ 국방부는 해군의 작전범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해군의 작전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